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7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性) 편중 방지 및 직종 다양화를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구성협의체 위원 구성 조항 신설(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함.
 - 협의체의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장이 되며, 위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시의회, 시 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 및 지명권자(시장)가 각각 1명씩 지정함.
- 나. 위원구성협의체 운영 조항 신설(안 제4조의2제4항 ~ 제6항)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이 성별·경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 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3)
- 자치경찰위원(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게 노력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 양성평등담당관: 개선 권고 (위원구성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자치경찰위원회: 불수용 (위원구성협의체 위원은 경찰법 제20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와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하여 구성되고, 약 60일 정도만 운영되는 한시적인 협의체라는 점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구성협의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4.13.~5.3.)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정진우(☎2133-9817)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회”라 하고, 내용 중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

다.

-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
-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3(서울특별시의회의 위원 추천) 서울특별시의회가 법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생략)</p> <p>②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p> <p>③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3조(<u>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u>)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p>	<p>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p> <p>-----</p> <p>-----</p> <p>-----</p> <p>-----</p> <p>-----</p> <p>-----</p> <p>-----</p> <p>③ <u>위원회</u> -----</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3조(<u>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u>) --</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 ----- <u>위원회</u>----- -----.</p>
<p><신설></p>	<p><u>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u></p>
<p><신설></p>	<p><u>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신설></p>	<p><u>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u></p>
<p><신설></p>	<p><u>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u></p>
<p><신설></p>	<p><u>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u></p>
<p><신설></p>	<p><u>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u></p>

현행	개정안
	<p>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신설>	<p>⑦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p>
<신설>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p>
<신설>	<p>제4조의3(서울특별시의회의 위원 추천) 서울특별시의회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p>	<p>제11조(위원의 수당)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p>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구성협의체 4명(위원장 제외)에 대한 참석수당
(참석 위원 4명 × 년 2회 × 15만원 = 120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위원구성협의체는 자치경찰위원 임기만료 60일 전부터 자치경찰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되는 한시적인 협의체이고, 회의 수당은 자치경찰 위원에 준하여 지급할 예정이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정진우 (02-2133-9817)